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김승원 · 장경태 · 이광희
권칠승 · 민병덕 · 조계원
이원택 · 박수현 · 임호선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 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을 “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의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록의 송부”를 “기록(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의 송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부가 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 및 원본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원본의 제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사본으로 송부·제출하

거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 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 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본인 기록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판 종료 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본을 보관하거나 원본을 전자문서화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 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를 “전자문서화하고”로,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1조(증거조사) ① ----- ----- ----- ----- ----. 이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후단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 ----- -----일. 이 경우 현장에서의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 -----

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기
록(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의 송부-----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재판부가 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 및 원본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원본의 제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사본으로 송부·제출하거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

<신 설>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본인 기록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판 종료 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본을 보관하거나 원본을 전자문서화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할 수 있다.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

-----전자문서
화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
을-----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